긴급 입찰 사유서

사 업 명	3호선 열차무선설비(LTE-R) 구매설치	
소요예산	금24,851,720,000원(금이백사십팔억오천일백칠십이만원), 조달수수료 제외	
사업기간	2026년 10월(계약 후) ~ 2028년 09월 30일	
계약방법	일반경쟁입찰 / 협상에 의한 계약 / 국제입찰	
긴급공고 법적근거 (해당사항에 체크)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④항	1.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	
	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	
	3.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	✓
	4.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	
	5.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	
긴급공고 사유	본 사업은 국가재난안전통신망(PS-LTE)과 연계하는 차세대 열차무선설비(LTE-R) 구축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입니다. 「재난·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·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」 제7조에 따라 기존 열차무선설비(TRS) 무선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2028.12.31.까지로 제한되어 있어, 허가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기존 열차무선설비(TRS)를 LTE-R로 전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 우리 공사는 실시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장비 제작, 전동차 차상장치 개조, 현장 설치, 종합시험 등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공정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사업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. 따라서 입찰 및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계획된 계약일정을 확보하고 사업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열차무선설비의 LTE-R 전환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긴급입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.	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④항 3호에 의거하여 본 사업의 긴급 입찰을 요청합니다.

2026.08.

대구교통공사 사장 (인)